

의안번호	2210048
의 퇴 인	임호선 의원
회 답 일	2025. 7. 16.
추계번호	25B25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의2 (심리지원)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함)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4조의2 (심리지원) 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심리지원(안 제34조의2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동물보호법」 제46조¹⁾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²⁾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심리 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 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 1) 「동물보호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 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 현황은 연평균 19,700건 수준임

[표 1] 동물의 인도적 처리 현황(2022~2024)

(단위: 마리)

구분	'24				'23				'22			
	소계	개	고양이	기타	소계	개	고양이	기타	소계	개	고양이	기타
총계	19,712	18,466	1,072	174	20,346	19,065	1,164	117	19,043	17,751	1,211	81
서울	589	413	67	109	557	387	95	75	646	373	226	47
부산	117	114	1	2	142	142	0	0	171	159	11	1
대구	665	563	89	13	542	436	102	4	501	404	96	1
인천	622	608	11	3	497	467	27	3	415	393	20	2
광주	297	242	55	0	308	284	24	0	219	207	12	0
대전	143	111	32	0	98	71	27	0	122	94	28	0
울산	163	146	14	3	130	96	33	1	145	122	23	0
세종	111	104	7	0	164	154	10	0	150	147	3	0
경기	5,109	4,870	204	35	5,433	5,188	224	21	4,581	4,219	335	27
강원	902	648	254	0	1,031	746	283	2	822	700	122	0
충북	1,048	965	77	6	1,043	989	50	4	794	702	91	1
충남	1,856	1,811	44	1	1,925	1,844	79	2	1,654	1610	42	2
전북	943	910	33	0	791	745	44	2	814	772	42	0
전남	1,762	1,761	1	0	1,861	1,855	6	0	1,850	1,842	8	0
경북	1,800	1,732	68	0	1,543	1,510	32	1	1,459	1,436	23	0
경남	1,705	1,674	30	1	2,305	2,287	16	2	2,238	2,227	11	0
제주	1,880	1,794	85	1	1,976	1,864	112	0	2,462	2,344	118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리지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심리지원 실시 현황 및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등 실시 현황(2022~2024년)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지원 내용	2022	2023	2024
국립정신 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예산	1,554	1,565	1,853
	지원건수(소계)	10,706	1,225	562
	재난심리지원 (개입 재난)	코로나19, 이태원사고	코로나19, 이태원사고, 대국민심층상담	인천 논현 호텔화재, 광진구 다가구주택화재,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인천 청라 전기차화재
국립 부곡병원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	예산	703	713	725
	지원건수(소계)	9,848	7,467	7,125
	심리상담	4,225	1,239	947
	교육	134	550	789
	소진·회복	102	396	267
	인식개선홍보	5,387	5,282	5,122
국립 나주병원 (호남권 트라우마 센터)	예산	557	594	595
	지원건수(소계)	11,919	2,480	2,268
	심리상담	11,171	1,303	1,122
	교육	170	998	742
	소진·회복	268	74	220
	인식개선홍보	310	105	184
국립 춘천병원 (강원권 트라우마 센터)	예산	484	492	492
	지원건수(소계)	3,943	2,764	1,916
	재난심리지원	3,843	2,645	1,771
	소진프로그램	100	119	95
	회복프로그램	—	—	50
국립 공주병원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	예산	570	594	609
	지원건수(소계)	6,960	2,140	1,929
	심리상담	6,584	1,568	1,169
	소진프로그램	183	428	460
	회복프로그램	193	144	300

주: 지원건수는 참여인원을 의미(중복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리지원을 지원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심리지원 대상 수의사의 수 및 경비 지원 방법·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각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한 심리상담요원 등의 인건비, 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팜플렛 제작 등을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심리지원 1회당 단가 등을 산출하기 어렵고, 해당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및 재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개정안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과는 내용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사업으로, 가축방역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사업³⁾이 있는데,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을 통해 심리상담·치료 등을 실시한 후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과 유사한 방법으로 개정안에 따른 수의사의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약 2억 6,300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임
- ※ 살처분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2025년 예산 편성 내역
 - 10백만원 = 20명×100천원(치료비)×10일(치료일수)×50%(국비)
- ※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해 의료기관을 활용한 심리상담·치료 등 실시 비용 지원 시 추가재정소요(농림축산식품부 추산): 263명*×100천원(치료비)×10일(치료일수) = 263백만원
- ‘24년 기준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263개소)을 토대로 추정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3) 가축방역대응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940-335)의 내역사업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지자체 직영 ¹⁾	위탁 ²⁾	전년 대비 증감
전국	263	75	188	10
	100.0%	28.5%	71.5%	4.0%
서울	27	0	27	-2
부산	16	0	16	0
대구	9	0	9	0
인천	16	0	16	0
광주	4	0	4	3
대전	1	1	0	0
울산	15	0	15	-1
세종	1	0	1	0
경기	38	12	26	0
강원	19	10	9	0
충북	11	2	9	0
충남	17	7	10	1
전북	24	6	18	10
전남	23	12	11	0
경북	22	12	10	0
경남	19	12	7	-1
제주	1	1	0	0

주: 1) 동물 구조·보호 등을 위해 시·도,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2) 시·도, 시·군·구가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

자료: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